**[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과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필요성,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해 2021년 5월경 기금의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하였고 2022년까지 석탄투자제한정책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및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정책 수립과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석탄투자제한기준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는지, 왜 정책수립이 지연되고 있는지,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60+ 기후행동,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행태를 규탄하고,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연령과 소득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렇게 마련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지급을 위해 운영된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규모는 2023년 4월 말 기준 976조 원에 달해 국민연금이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정책은 국민들의 중대한 관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참여권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국민연금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원회 회의록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회의 개최 후 1년이 지나면 회의록 전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고, 특정 안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최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그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석탄투자제한 정책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자 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2021. 4. 30. 개최된 2021년도 제5차 회의에서 석탄 투자제한전략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21년도 제6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하였다. 이후 2021년도 제9차, 2022년도 제1, 2차 회의에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상황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와 같은 5개의 석탄투자제한정책 관련 안건 중 2021년도 제9차 회의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안건(2021년도 제5,6차 및 2022년도 제1차,2차 회의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우리는 2023. 5. 24.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석탄투자제한정책 관련 안건이 논의된 5개 회의록, 실무TF 명단과 회의록, 전문가TF 명단과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 6. 8. 전문가 TF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및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입증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정서에 석탄투자제한정책 논의과정 공개가 왜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일절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2021년도 제9차, 2022년도 제1, 2차 회의록의 공개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령권자로서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며,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석탄투자제한 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들에게 석탄투자제한정책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수립 계획을 발표하라.

하나,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화석연료의 좌초자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속히 석탄투자제한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년 7월 11일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60+ 기후행동, 사단법인 기후솔루션